

201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울의 중심
중구



서울중구

목 차

총 평	3
I. 공통공시 총괄	4
II. 예산규모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6
3. 중기지방재정계획	7
4. 지역통합재정통계	8
III. 재정여건	9
1. 재정자립도	9
2. 재정자주도	10
3. 통합재정수지	11
IV. 재정운영계획	12
1. 성인지 예산현황	12
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3. 성과계획서	15
4. 재정운영상황 개요서	16
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6.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18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8

2016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135호(2016. 2.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 우리 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14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385억원)보다 23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9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217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36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7.1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54%입니다.
- ◆ 우리 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조금 적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세수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긴축운영과 재정의 건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결산정보-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오학석(02-3396-49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46	3,621	525	4,385	4,013	372
	세출예산	4,146	3,621	525	4,385	4,013	37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57.11%	58.63%	△1.52%	30.23%	30.00%	0.23%
	재정자주도[당초]	62.54%	62.87%	△0.33%	53.87%	53.03%	0.84%
	통합재정수지[당초]	-17	-19	2	15	-0.3	14.7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평균은 14개 유형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13개구의 평균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4,586	334,727	0	53,296	26,56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8,315	305,576	311,562	362,121	414,58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128	100%	253,656	100%	259,495	100%	288,093	100%	334,727	100%
지방세	110,386	46.36%	107,771	42.49%	110,059	42.41%	113,755	39.49%	118,985	35.55%
세외수입	72,845	30.59%	72,067	28.41%	54,620	21.05%	55,159	19.15%	72,162	21.56%
지방교부세	2,746	1.15%	2,596	1.02%	2,673	1.03%	2,750	0.95%	2,786	0.83%
조정교부금 등	15,601	6.55%	18,836	7.43%	8,801	3.39%	9,467	3.29%	15,402	4.60%
보조금	36,550	15.35%	52,385	20.65%	62,341	24.02%	86,462	30.01%	98,393	29.3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21,000	8.09%	20,500	7.12%	27,000	8.0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4,586	334,727	0	53,296	26,56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8,315	305,576	311,562	362,121	414,58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128	100%	253,656	100%	259,495	100%	288,093	100%	334,727	100%
일반공공행정	22,302	9.37%	22,521	8.88%	22,597	8.71%	20,584	7.14%	23,890	7.14%
공공질서 및 안전	1,792	0.75%	2,004	0.79%	2,178	0.84%	2,089	0.73%	2,131	0.64%
교육	5,995	2.52%	5,290	2.09%	5,028	1.94%	4,624	1.60%	4,990	1.49%
문화 및 관광	11,331	4.76%	11,857	4.67%	13,087	5.04%	13,171	4.57%	15,997	4.78%
환경 보호	11,960	5.02%	14,270	5.63%	14,180	5.46%	15,018	5.21%	27,434	8.20%
사회 복지	62,167	26.11%	72,399	28.54%	80,731	31.11%	96,043	33.34%	104,320	31.17%
보건	5,206	2.19%	5,482	2.16%	5,678	2.19%	6,541	2.27%	6,720	2.01%
농림해양수산	93	0.04%	201	0.08%	165	0.06%	181	0.06%	232	0.07%
산업·중소기업	1,235	0.52%	4,785	1.89%	4,105	1.58%	2,436	0.85%	2,403	0.72%
수송 및 교통	2,918	1.23%	5,149	2.03%	5,308	2.05%	7,344	2.55%	8,804	2.63%
국토 및 지역개발	5,601	2.35%	4,779	1.88%	5,469	2.11%	12,315	4.27%	30,414	9.09%
예비비	6,570	2.76%	6,050	2.39%	3,413	1.32%	4,353	1.51%	2,817	0.84%
기타	100,956	42.40%	98,869	38.98%	97,556	37.59%	103,392	35.89%	104,574	31.2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80%
자 체 수 입	210,052	218,321	210,042	212,977	215,555	1,066,947	0.60%
의 존 수 입	120,845	120,801	104,144	113,251	114,695	573,736	△1.3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425	74,541	63,107	61,510	60,331	347,914	△9.10%
세 출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80%
경 상 지 출	142,247	162,702	156,581	153,637	154,014	769,181	2.00%
사 업 수 요	277,075	250,961	220,712	234,102	236,567	1,219,417	△3.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85,397	439,941	54,543	24.8%
중구	362,121	414,586	52,465	12.65%
공사·공단	13,078	15,498	2,420	15.61%
출자·출연기관	10,198	9,857	△341	△3.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중구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2개) : 중구문화재단,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7.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11%	334,727	191,146	116,581	0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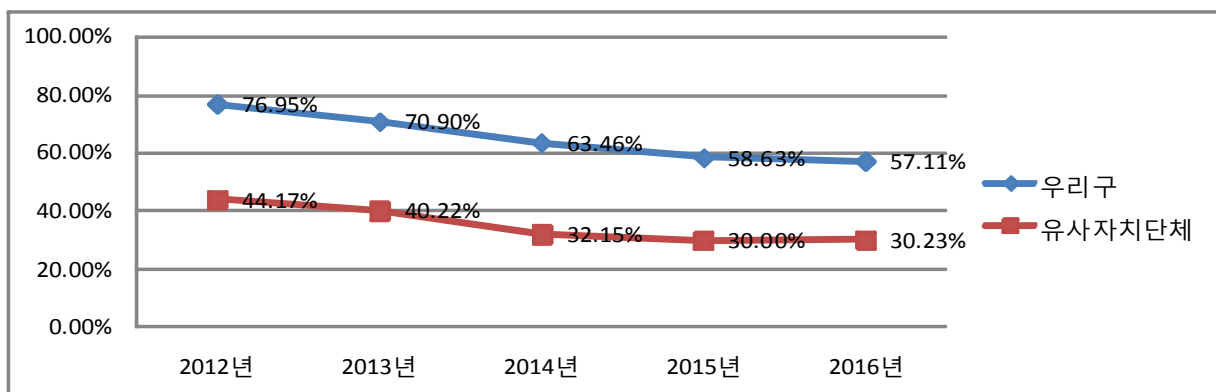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6.95%	70.90%	63.46%	58.63%	57.11%
최종예산	72.73%	67.41%	58.43%	55.85%	-

유사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구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편이나, 세목교환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의존재원 증가로 인해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54%	334,727	209,334	98,393	0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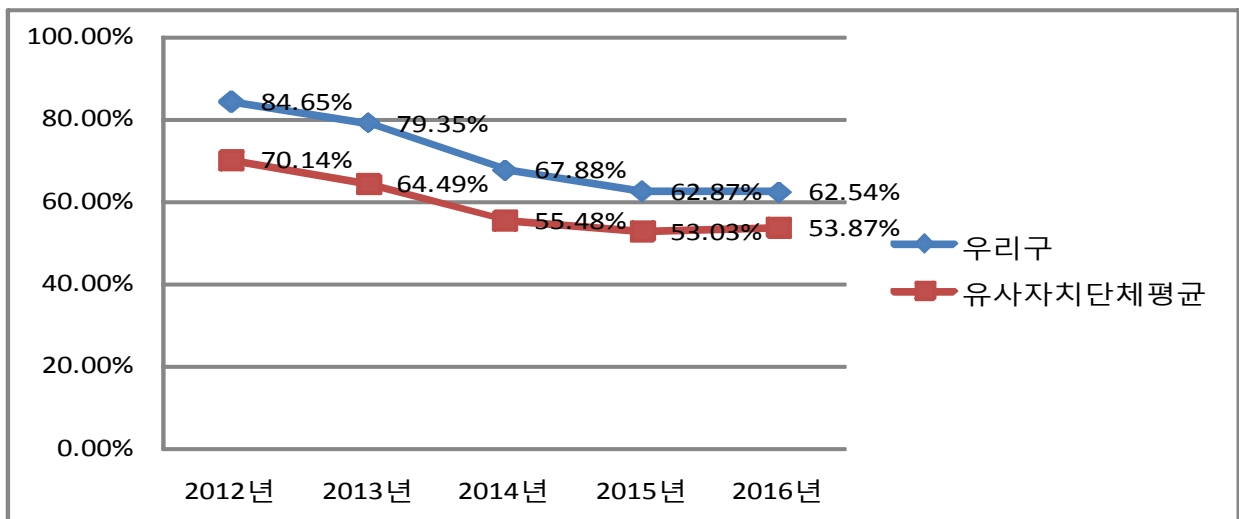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84.65%	79.35%	67.88%	62.87%	62.54%
최종예산	80.72%	75.75%	63.77%	62.30%	-

유사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보조금의 비중이 낮아 재정자주도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1,112	387,926	6,754	9,773	3,019	58,169	390,945	-59,833	-1,664
일반회계	307,727	332,590	0	0	0	27,000	332,590	-24,863	2,137
기타 특별회계	21,333	52,122	139	1,173	1,034	31,169	53,156	-31,824	-655
기 금	2,052	3,214	6,615	8,600	1,985	0	5,199	-3,147	-3,14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0,904	-33,301	-34,787	-53,431	-59,833
통합재정수지 2	-1,239	-2,537	-1,615	-1,881	-1,664

☞ 세계개편 등으로 인하여 세입은 감소 추세인 반면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로 인한 지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지출규모가 회수금보다 큰 점 또한 주요 감소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34,636
여성정책추진사업	17	7,7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	26,07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808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433>)

☐ [중구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결산정보](#)→[예산현황\(2016년 성인지 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4,586	2,406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24개 사업)		2,406	
도로시설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84	신규사업
도로시설과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91	"
도로시설과	도로 포장 및 정비	92	"
공원녹지과	공원 내 시설물 유지 · 보수	240	"
공원녹지과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80	"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144	"
문화관광과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70	"
사회복지과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220	"
취업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165	"
안전치수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230	"
안전치수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200	"
도로시설과	낙후된 을지로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100	"
안전치수과	충무 지하보도 환경개선	50	"
공원녹지과	삭막한 도심을 아름답게, 푸르게!	90	"
공원녹지과	서울 도심의 병든 소나무를 살려주세요	55	"
도로시설과	주민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보강해주세요	50	"
문화관광과	도서관에서 컴퓨터도 맘대로 사용하고 다양한 책을 접하고 싶어요	45	"
자치행정과	장애인 화장실 보수 시급	15	"
여성가족과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	95	"
도로시설과	통행로 재시공	10	"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 정비	40	"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 및 계단 정비	40	"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지하문화교실 시설 개선	50	"
도로시설과	골목 안 노후 도로 및 계단 정비	50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8	134	141	388,024	335,692	52,331
사담당관	1	1	2	2	196	191	4
공보실	1	1	2	2	840	887	-48
행정관리국	1	11	23	25	120,886	113,970	6,915
기획재정국	1	8	18	19	11,863	13,274	-1,412
복지환경국	1	15	27	32	139,390	118,411	20,979
도시관리국	1	8	20	17	30,992	12,383	18,609
안전건설국	1	8	22	23	65,752	59,011	6,742
보건소	1	5	18	19	15,122	14,814	308
구의회	1	1	2	2	2,984	2,751	23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7.11%	62.54%	31.17%	28.09%	40.03%	41.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8	78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33	951	1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1	5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3	103	0
	의원국외여비	29	29	0
지방보조금		32,419	34,169	1,7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84	876	-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293	3,293	0
공무원 일·숙직비		232	232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구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예산효율화 우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150
정부 3.0 추진 우수	정부 3.0 추진평가 우수단체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